

環境汚染과 民事責任

이 승 우*

< 차 례 >

- I. 서 언
- II. 시설책임과 행위책임
- III. 책임의 원칙
- IV. 손해의 귀책
- V. 원인추정
- VI. 다수의 원인
- VII. 결 론

I. 서 언

환경오염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에 의해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¹⁾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동물계(Fauna), 식물계(Flora), 하천(Gewässer), 토양(Böden)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환경오염은 그 유형과 내용이 다양하다.²⁾ 이러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자를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³⁾해야 하지만, 환경침해(Verletzung)로 인해 손해(Schaden)가 발생하면⁴⁾ 귀책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민

* 전남대강사·법학박사

- 1) Günter Hager, Der Vorschlag einer europäischen Richtlinie zur Umwelthaftung, JZ 2002, 901(902). 환경(Umwelt)이라 함은 생태계(biologische Vielfalt), 하천(Gewässer), 토양(Boden), 지하(Unterboden) 등을 말한다(유럽환경책임지침 RiL 79/409/EWG v. 2. 4. 1979, RiL 92/43/EWG v. 21. 5. 1992-자연생태 공간의 보존과 야생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규정).
- 2) Günter Hager, a. a. O., 901(902); 박원선, 공해와 법적 규제, 대한민국 학술원 공해문제연구회, 1971, 제1집, 14면.
- 3) Reh binder, Towards a Community Liability Regime; The Commision's White Paper on Environmental Liability, 3. Env. Liability, 2000, 85 f.

법 제750조에 의해 사업활동 및 기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에 의한 과실책임⁵⁾이나, 제758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등에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과실책임은 환경오염에 있어서 큰 의미는 갖지 않지만, 그러나 무과실책임을 인정되지 않는 영역에서 환경소송의 전제가 된다.⁶⁾

독일의 경우 1991년 환경책임법(Umwelthaftungsgesetz) 제1조⁷⁾에 환경침해의 대상은 재산권, 생명, 신체, 건강, 그리고 개별적인 기타 법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⁸⁾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 또는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환경침해에 따른 손해(ökologische Schäden)⁹⁾의 범주는 아직 학문적으로 완전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손해배상의 대상인 토양, 대기, 수질 등 다양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기본원칙과 입증에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

II. 시설책임과 행위책임

한국의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조와 제5조에 의해 단지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에 입각해서 그 당사자로서 사업자까지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¹⁰⁾ 동법 제31조 제1항은 민법 제750조와 같은 형태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모든 종류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적 손해뿐만 아니라 물적 손해에 대해 책임

4) Rabel, Die Grundzüge des Rechts der unerlaubten Handlungen, in: Deutsche Landesreferate zum 1. Internationalen Kongreß für Rechtsvergleichung, 1932, S. 13; v. Liszt, Die Deliktsobligationen, 1898, S. 21.

5) 권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663면, 685면-686; 김중환, 채권각론(민법강의IV), 박영사, 1989, 458면; 이명갑, 과실개념에 대한 관례, 학설의 진전과 변용, 대한변호사협회지, 1987. 9, 51면; 이동기, 환경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완화에 관한 연구, 법조, 2003. 8, 52면, 62면; 정기웅, 불법행위법상 과실개념에 대한 역사적 고찰, 법조, 1985. 2, 58면; 황적인, 현대민법론IV, 박영사, 1987, 357면.

6) 이동기, 전제논문, 52면.

7) 독일환경책임법 제1조(환경작용으로 인한 시설책임) 부록1에 제시된 시설의 환경작용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와 건강이 침해되고 물건이 손상되면 시설의 소유자는 피해자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8) Larenz, Schuldrecht II, §77 IX; Medicus, Schuldrecht II, §148 II.

9) Rehbindler, Fortentwicklung des Umwelthaftungsrechts, Natur&Recht 89, 161 ff.; Schulte JZ 1988, 278; Diederichsen, Bitburger Gespräche, Jahrbuch 1989, 70 f.; Landsberg-Lülling, UmweltHR, 1991, §1 Rdnr. 117.

10) 윤용석, 환경오염의 민사책임에 관한 새로운 동향, 재산법연구 제11권 제1호, 1994, 74면.

을 저야 한다.

그러나 독일의 환경책임은 환경시설(Anlage)로부터 발생한다. 법은 의도적으로 행위책임(Handlungshaftung)과 물질책임(Stoffhaftung)을 수용하지 않았다. 원고적격자(Passivlegitimierte)는 일정한 기간동안 환경작용(Umwelteinwirkung)에 따른 환경침해에 귀책될 수 있는 자이다.¹¹⁾ 환경책임에 수질관리법과 같은 행위책임이나 원자력법과 같은 물질책임을 적용하지 않고, 명백한 계속적 환경침해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시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시설책임을 인정하는 이유는 종래 독일의 위험책임이 대체로 위험시설에 대한 책임이었다는 사실과 환경에 의한 위험성이 매우 다양하여 행위책임으로는 범위가 너무 확대될 우려가 있어서 타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¹²⁾ 이러한 이유로 포괄적인 행위책임으로 시설에 제한을 두는 위험책임의 일반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¹³⁾

한편, 독일법은 보호법익에 관하여 열거주의(Enumerationsprinzip)를 택하므로, 법규에 규정된 특정시설의 환경침해로 인한 환경위험책임(Umweltgefährdungshaftung)에 의해 귀책된다. 이러한 규정의 체계는 법적 안정성(Rechtssicherheit)을 보장하나 규정되지 않는 책임의 흠결(Haftungslücken)과 불평등처리(Ungleichbehandlung)의 문제점을 갖는다. 이들 시설은 독일환경책임법 부록1에서 총96호로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다. 가령 제45호 a)는 산(Säuren), 염기(Basen), 소금(Salze)과 같은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원료의 생산시설, 제45조 p)는 비누, 세제 생산시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호 b)의 경우 기체형태의 가연재 원료에 의한 화기를 다루는 시설은 난방시설이 100메가와트 이상일 경우 환경오염에 귀책된다. 본질적으로 산업시설은 환경책임을 부담한다고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례¹⁴⁾가 판시하고 있다. 이 판례에서 원고는 수의대에서 근무 중 동물에 의해 병원균에 감염되었다. 그는 방역제를 생산하고 세균을 박멸하는 환경책임을 지고 있었다. 독일환경책임법 부록1 제48호 c)는 미생물조직과 구성부분을 언급하면서 단지 의약품의 공장생산시설만을 지칭한다. 동법 적용을 배제하면서, 전염이 토양, 공기, 물에 오염된 물질과 환경침해에 의해서 야기된 것인지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환경책임으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 조업시설은 용량의 크기와 일정한 크기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데, 일정 오염물질이 방출되면 그에 상응해서 환경침해나 위험책임

11) Schmidt-Salzer, Das UmwelthaftungsG, 1991, VersR 1991, 9 ff.

12) Feldmann, Umwelthaftung aus umweltpolitischer Sicht, URP 1991, 48.

13) Deutsch, Karlsruher Forum 1967, 5 f.; Haftungsrecht I, 1976, 384; VersR 1971, 2 ff.; Kötz, AcP 170, 19 f.

14) BGH NJW 1989, 2947; Deutsch, NJW 1990, 751.

을 부담한다. 그러나 산업시설에 전제되는 일정크기와 필요성은 그 비용이 생산결과에 분배되므로 책임이 추정된다. 오염물질의 방출정도는 일정기간의 환경침해를 추정하게 하고, 이는 독자적인 인과관계(Alleinkausalität)를 갖는다. 시설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거나, 미완성시설에 의한 환경침해나 완성된 시설의 장래 위험성이 문제되는 한 그 과정이 문제된다. 아직 운영되지 않는 시설의 경우 환경침해가 이전, 이후 시설의 위험성에 기인한 것인지 문제이다.¹⁵⁾ 시설기준치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환경오염의 확산의 우려가 있는 시설의 경우 열거의 원칙에 따라 귀책되지 않는다. 주로 산업 그리고 대규모 시설이 여기에 해당된다. 노천극장¹⁶⁾이나 축구장, 테니스장 그리고 수영장¹⁷⁾ 등 운동시설 등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의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책임의 적용 당사자로서 시설과 더불어 사업자가 포함되어 환경책임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독일의 환경책임법의 적용범위보다 넓기 때문에 개념이 모호하여 적용범위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역할에 따라서 환경책임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만큼 잠재적 피해자에게는 유리한 장점이 있다.¹⁸⁾

Ⅲ. 책임의 원칙

1. 무과실책임

한국의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환경오염에 의한 민사책임을 지는 사업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구별하지 않고 가해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¹⁹⁾ 그러나 무과실책임(verschuldensunabhängige Haftung)을 규정하고

15) 오석락, 독일환경법의 사법체계, 환경문제연구총서 I, 대한변호사협회, 1991, 36면; 이동기, 전계논문, 79면.

16) BGHZ 111, 63-JZ 1991, 91.

17) BGH NJW 1983, 751; Deutsch, VersR 1984, 1001 ff.

18) 윤용석, 전계논문, 75면; 최상호, 환경오염에 대한 민사책임, 계명대출판부, 1999, 47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책사유(Entlastungsgründe)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2. 결과책임

독일환경책임법 제1조는 인과관계책임(Kausalhaftung)을 규정하고 있다. 시설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의 신체와 건강이 침해되고, 물건이 손피되는 등 법익이 침해되면, 귀책된다. 시설 보유자는 피해자에게 보호법익의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필수적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경침해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²⁰⁾ 기술수준이 준수되어 거의 귀책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침해성이 인식될 수 없거나, 기술수준이 침해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범위 내에서 독일환경책임법은 독일제조물책임법과 확실히 구별된다.²¹⁾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의 경우, 법에 의한 시설의 정상적인 조업(rechtsmäßigen Normalbetrieb)에 따른 인과관계에 의한 귀책 여부가 문제이다.²²⁾ 기본적으로 법에 의한 시설의 정상적인 조업에 따른 결과는 면책된다.²³⁾ 물건이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²⁴⁾에 의해 시설의 법에 의한 정상적인 조업으로 단지 장소적 관계(örtliche Verhältnisse)에 의해 추정될 수 있는 비본질적이거나 일정정도 침해라면 사회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상당한 침해(sozialadäquate Beeinträchtigung)가 존재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된다. 그러나 원인추정(Ursachenvermutung)이 흠결되면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조업에 의해서만 입증에 따른 결과가 제시된다. 한편 인과관계가 입증된다할지라도 법에 의한 정상적인 조업인 경우

19) 광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781면; 임정평, 환경오염에 대한 사법적 고찰, 법정고시, 1997, 9, 6면; 채권각론, 법지사, 1995, 762면; 최상호, 환경오염에 대한 민사책임, 계명대학교출판부, 1999, 47면.

20) 환경침해손해에 있어서 결과책임(Erfolgshaftung)이론은 Mauczka, Der Rechtsgrund des Schadensersatzes außerhalb bestehender Schuldverhältnisse, 1904, 142 ff.; Adler, Unverschuldetes Unrecht, 1910, 19; Marton, AcP 162, 1 ff.

21) Schmidt-Salzer, a. a. O., S. 10.

22) Reh binder, a. a. O., S. 155 f.; Diederichsen, a. a. O., S. 71 ff.

23) Reh binder, Towards a Community Liability Regime; The Commission's White Paper on Environmental Liability, 3. Env. Liability, 2000, 85, 87.

24) 환경책임법 제5조(물건손상시 책임제한) 시설이 환경책임법 제6조 제2항 제2문에 의해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면 물건이 상린관계에 따라 추정할 수 있는 단지 비본질적으로 일정 정도 침해될 때 물건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이 배제된다.

면책된다.²⁵⁾ 대규모연소시설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다른 원인에 의할 수 없는 알레르기가 발생하여 확산되었다면 그로 인한 건강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위험책임

환경보호를 위한 책임유형에는 위험책임(Gefährdungshaftung), 불법책임(Unrechtshaftung), 희생보상책임(Aufopferungshaftung)²⁶⁾의 3종류가 있다. 위험책임이란 위험한 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즉, 위험물 관리자에게 절대적으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²⁷⁾ 독일수질관리법이 수자원의 성질 변화로 인한 위험책임²⁸⁾을 묻는 반면에 연방임및시온보호법(Bundesimmissionschutzgesetz)은 오히려 불법책임과 희생보상책임을 묻는다.²⁹⁾ 무과실책임의 원인은 특별한 위험원의 생성³⁰⁾에 의하므로, 조업활동에 따른 손해를 무과실책임에 의한 위험책임에 귀책시키고 있다.³¹⁾ 위험에 따른 귀책은 책임의 근거로서 100년 전 이래 인정되었다. 결과책임으로써 시설소유자가 귀책되는 것은 위험의 지배(Beherrschung des Risikos), 손해부담의 정도, 위험으로부터 수익, 그가 수인할 수 있는 위험의 물건과 조업의 조건성 때문이다.³²⁾ 요컨대 입법자는 그의 행위 즉 시설의 운영에 따라 면책사유를 들어 입증해야 한다. 과도한 위험은 단지 그 결과가 운영자에 의해 감소되었을 때 인정된다. 조업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책임은 환경침해가 시설의 위험성에 기인하거나 하였던 사정에 의한다. 위험책임론에 의해 법에 의한 정

25) Vgl. BGH NJW 1972, 40(42); VersR 1979, 822; MünchKomm-Stein, a. a. O., §830 Rdnr. 25; Staudinger/Belling/Eberl-Borges, a. a. O., §830 Rdnr. 79; Benicke, Jura 1996, 127(130).

26) 이동기, 전제서, 67면. 사업자가 조업활동에 의해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 그 이익 중에 손해를 배상케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견해이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에 따르는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는 로마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손해가 이익을 넘는 경우에는 구제방법이 없는 결함이 있다.

27) 이동기, 전제논문, 67면-68면.

28) Larenz, VersR 1963, 599 ff.; Baur, JZ 1964, 354 f.

29) 환경책임의 귀책에 대해서 vgl. Deutsch, Haftungsrecht I, 1976, 31.

30) v. Caemmerer, Reform der Gefährdungshaftung, 42, 15=Gesammelte Schriften, Band III, 1983, 239, 249; Kötz/Wagner, Deliktsrecht, 9. Auflage, 2001, Rdnr. 341.

31) Enneccerus/Lehmann, Schuldrecht, §230 II; Larenz, Schuldrecht II, §77 I; Oftinger, Schweizerisches HaftpflichtR I, 16 f.; Schäfer/Ott, Lehrbuch des ökonomischen Analyse des Zivilrechts, 2. Auflage, 1995, 171 f.

32) Mataya, Das Recht des Schadensersatzes vom Standpunkt der Nationalökonomie, 1988; Bienenfeld, Die Haftung ohne Verschulden, 1933, 29 ff.; Larenz, JuS 1965, 374; M. Rümelin, Schadensersatz ohne Verschulden, 1910, 30, 46; v. Caemmerer, Reform der Gefährdungshaftung, 1971, 15; Esser, Grundlage und Entwicklung der Gefährdungshaftung, 1969, VI.

상적인 조업을 계속해서 책임영역 내에 두자는 것은 전적으로 결과론적 이다. 위험책임은 위법성이 없이 존재한다.³³⁾ 법에 의한 정상적인 조업은 '위험책임'의 기준이 아니다. 오히려 적법성 인정으로 인해 취득되는 방어권이 희생보상의 형성 속에서 목적물의 보유자에게 보답하는 '희생보상책임'의 출발점이 된다.³⁴⁾

입법자에 의해서 환경책임은 전형적인 위험책임으로 구성되었다. 환경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할 수 있다. 독일환경책임법 제1조의 목적물의 침해와 손해는 환경위험의 귀책관계 속에서 존재해야 한다. 동시에 독일환경책임법은 확산되는 위험책임이 규정되어 있는 제조물책임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제조물에 의한 침해는 그 속에서 산업생산과정의 위험과 동시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귀책된다. 수공업생산품에 의한 손해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독일환경책임법 제1조는 동법 제3조³⁵⁾ 제1항의 물질, 진동, 소음, 압력, 광선, 가스, 증기, 열 혹은 토양, 공기, 물에 확산된 기타 현상을 야기하는 환경작용을 요구한다. 동시에 입법자는 책임의 근거로 책임의 원인과 범위의 발생을 규정하고 있다.

4. 책임 근거로서 인과관계

조업시설의 운영은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혹은 물건에 침해를 발생시킨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우선 자연과학적 의미에서 원인(Ursächlichkeit)이다. 조업시설 등에 의해 손해의 원인을 야기시킨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원인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행위자의 과실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³⁶⁾ 조업시설의 운영은 환경오염의 조건(Bedingung der Verletzung)이 된다.³⁷⁾ 개연성에 의한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의 가치판단은 요구되지 않는다.³⁸⁾ 오히려 위험책임의 일반규정에 의해 위험은 책임근거적 인과관계(haftungsbegründende Kausalzusammenhang)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법익침해는 환경책임의 현실적인 위험을 존재케 한다. 독일환경책임법상 법문은 명확하지 않다. 독일환경책임법 제3조 제1항에서 손해(Schaden)는 환경작용에 의해

33) Enneccerus/Nipperdey, Allgemeiner Teil, §217 I; RGZ 141, 407; Deutsch, Karlsruher Forum 1967, 4.

34) Hubmann, JZ 1958, 498 ff.; Larenz, JuS 1965, 376 f.; BGHZ 48, 98=JZ 1968, 64.

35) 독일환경책임법 제3조(개념규정) 제1항 손해는 물질, 진동, 소음, 압력, 광선, 가스, 증기, 열 혹은 토양, 공기, 물에 확산된 기타 현상을 야기하는 환경작용에 의해 존재한다.

36) 이동기, 전제논문, 68면.

37) Larenz, Schuldrecht I, §27 Abs. 3; Hart&Honore, Causation in the law, 62 ff.; vgl. Engisch, Die Kausalität als Merkmal strafrechtlicher Tatbestände, 1931, 29.

38) BGHZ 79, 259=JZ 1981, 314; Traeger, Der Kausalbegriff im Straf- und Zivilrecht, 1904, 305.

일정요건을 충족시킬 때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이 독일환경책임법 제1조에 규정된 법익침해를 위해 요구되지 않는다. 위험실현의 요건은 보다 더 책임근거적 인과관계를 위해 유효하다. 목적물의 침해가 물질, 진동, 소음, 압력, 광선, 가스, 증기, 열 혹은 토양, 공기, 물에 확산된 기타 현상에 의해 발생되지 않는다면 책임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입법자는 위험책임만으로 적극적 임박시온을 입증하고자 했다. 피해자들의 이용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소극적 환경작용은 가령 햇볕 또는 방사선과 같은 자연적 혹은 인공적 에너지원의 단절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³⁹⁾

IV. 손해의 귀책

1. 책임충족적 인과관계

조업시설로 인해 환경침해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손해가 발생되기 위한 환경침해는 계속된 환경작용으로 책임충족적 인과관계(haftungsausfüllende Ursachenzusammenhang)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독일환경책임법 제1조의 ‘그로 인해 존재하는 손해를 배상한다(den daraus entstehenden Schaden zu ersetzen)’라는 법문으로부터 제기된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즉, 책임원인이 문제이다. 또한 인과관계는 결과의 조건을 말한다. 사망, 상해 혹은 물건손괴는 손해가 없다면 모르지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손해발생책임원인은 자연법상 침해와 시설로 귀착될 수 있다.

과실책임과 달리 판례는 책임충족의 범위에서 더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아닌 위험책임을 요구한다.⁴⁰⁾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도 인과관계에 의해 배상될 수 있다.⁴¹⁾ 조업시설이 소음과 진동을 통해서 정신적 침해를 야기시켰을 때 그로 인한 손해는 비록 피해자의 특별한

39) 소극적 임박시온에 대해서 vgl. Heck, Sachenrecht, 1930, 219; 에너지원에 대한 방해(고층건물로 인한 텔레비전 수신장애)-BGHZ 88, 347.

40) BGHZ 79, 259=JZ 1981, 314. 책임충족적 인과관계의 체계 내에서 위험책임의 경우 상당성 표지를 포기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룬다; vgl. Deutsch, Unerlaubte Handlungen und Schadensersatz, 1987, Rdnr. 348; Landsberg-Lülling, UmweltHG §1 Rdnr. 162가 책임의 근거와 관련하여 환경책임법상 상당성론을 다시 활성화하기를 원한다.

41) 이동기, 전게논문, 54면.

기여가 있다 할지라도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⁴²⁾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액수를 산정하는 데 환자의 여명(餘命), 수입 및 생활상황 등 제반 사정이 참작된다.⁴³⁾

2. 위험실현

책임충족적 인과관계는 침해와 손해와의 관계이다. 이 손해는 환경작용에 의해 발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독일환경책임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위험책임이 적용되는 필수적인 위험실현에 흠결이 있게 된다. 침해뿐만 아니라 손해가 위험책임의 동기, 즉 실현되는 위험과 귀책관계 속에서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은 독일환경책임법 제1조와 제3조의 규정 속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전제된 위험실현은 일반적으로 상당인과관계의 일반적인 예견성에 근거한 기준보다 훨씬 더 좁다. 침해와 손해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입법자의 우려이다. 위험의 실현은 임박시온의 형태와 확산의 종류에 의해 규정된다.

(1) 임박시온에 의한 위험실현

독일환경책임법 제3조에 의해 손해가 물질, 진동, 소음, 압력, 광선, 가스, 증기, 열 혹은 토양, 공기, 물에 확산된 기타 현상에 의해 야기되지 않았을 때, 손해는 환경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 여기에 규정된 임박시온의 형태는 책임충족적 또는 책임근거적 인과관계⁴⁴⁾를 위해서 유효하다. 입법자는 독일민법 제906조의 영향⁴⁵⁾으로 무엇을 환경작용으로 간주할 것인지 규정하고 있다. 개념규정은 동시에 물적이고 추상적이다. 이미 민법 이론으로부터 '진동, 소음, 압력, 광선, 가스, 증기, 열'은 알려져 있고 인지된 특성으로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외에 물질(Stoffe)과 기타 현상(sonstige Erscheinungen)이 문제이다.

42) Traeger, Der Kausalbegriff im Straf- und Zivilrecht, 31 ff.; Deutsch, Haftungsrecht I, 1976, 139 f.; Honore, Int. Enc. Compl. XI 7-121; RGRK-Steffen, §823, Rdnr. 75에서 정신적 인과관계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43) 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2민상90판결.

44) 책임충족적 인과관계와 책임근거적 인과관계의 구별에 대해서 Looschelders,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ädigten im Privatrecht, 1999, S. 324 ff.; Staudinger/Belling/Eberl-Borges, a. a. O., §830 Rdnr. 84; Eberl-Borges, NJW 2002, 949(951); Esser/Weyers, a. a. O., §60 I 1 c, S. 232 f.

45) 물권법상 임박시온의 설명과 역사에 대해서 vgl. RGRK/Augustin, Band 3, 12. Auflage, 1975 ff., §906, Rdnr. 14 ff.; MK-Säcker, Band 6, Sachenrecht, 3. Auflage, 1997, §906, Rdnr. 31 ff.; Wolff/Reiser, Lehrbuch des Sachenrechts, 1975, §53; Heck, Grundriß des Sachenrechts, 1930, 219.

물질(Stoffe)이란 물건(Sachen)이나 미세한 조각(Stückelung)으로 형체를 갖고 존재하는 현상(körperliche Erscheinung)이다. 그러므로 돌조각, 먼지와 같은 큰 형체를 갖는 임밋시온은 박테리아,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winzige Lebewesen)처럼 물질로써 간주된다. 이러한 것들은 독일환경책임법 부록 제48c호에서 '미생물조직 그 구성요건 혹은 신진대사물(Mikroorganismen sowie deren Bestandteile oder Stoffwechselprodukte)'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기타 현상(sonstige Erscheinungen)'의 개념은 다소 제한되어 있다. 또한 독일민법 제823조 제1항의 기타 권리(sonstiges Recht)⁴⁶⁾의 영역에서처럼 입법자는 확장의 형식을 구체적인 형태(konkrete Gegebenheiten)로 연결시킨다. 나타나는 현상은 공개적으로 현상 속에서 전파와 기온과 같은 환경작용으로 무형적인 것일 수 있다. 급부와 시설이 건강에 유해한 전자파를 방사했을 때, 자력(Magnetismus)을 광선(Strahlung)으로 간주할 수 없는 때, 경우에 따라서 자력을 '현상(Erscheinung)'이라 할 수 있다. '기타 현상(sonstige Erscheinungen)'은 장래에 인식할 수 있는 환경작용으로 파악해야만 한다.

(2) 확산의 종류에 의한 위험실현

불과 관련된 구 세계의 4가지 요소는 임밋시온이 토양, 대기와 물 속으로 확산되는 것을 요구할 때, 독일환경책임법 제3조 제1항의 확산기준 속에서 나타난다. 사실 모든 종류의 공동재산(res communes omnium)이 그 자체로써 보호되지 않으나 환경작용을 위해서 전달매체가 요구된다. 여기에 입법자가 무엇을 일련의 환경작용으로 생각했는지 의문이다. 여기서 제시된 종류와의 비교는 임밋시온을 돕는다. 진동은 토양을 통해 전달되고 소음, 가스, 증기는 대기를 통해서 확산된다. 열은 또한 물 속에서 확산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압력과 광선 또한 거대한 형체의 임밋시온과 미생물조직으로 존재하는가? 압력과 광선은 토양, 대기, 물 전달매체를 통해서 확산될 수 있다. 이러한 전달매체는 미생물조직과 함께 존재한다. 거대한 형체의 임밋시온은 일반적으로 대기와 물에 의해서 확산된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오염확산이 배제되어야 하는가? 전달매체는 직접적 혹은 개별접촉인가, 혹은 단지 인간의 자유공간의 기술(Beschreibung des Freiheitsraums des Menschen)로 확산의 전달매체로 해야하는가?

46) 기타 권리의 개념에 대해서 vgl. RGRK/Steffen, §823, Rdnr. 26;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 2, Besonderer Teil, 1. Handband, 13. Auflage, 1986, §72 I; Medicus, Schuldrecht II, Besonderer Teil, 8. Auflage, 1997, §140.

(3) 불가항력에 의한 위험책임 배제

조업시설이 돌발적인 강풍이나 폭우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파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조업시설 자체에 하자가 없었다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정도라면 하자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사업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된다.⁴⁷⁾

독일환경책임법 제4조는 손해가 불가항력(höhere Gewalt)에 의해서 야기된 때 손해배상이 배제된다. 불가항력은 지진과 제3자에 의한 돌발적인 침해와 같은 기본적인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론에 따르면 보통의 위험이 아닌 조업과 관련이 없는 사건에 존재한다.⁴⁸⁾ 불가항력은 오늘날 객관적 이론에 의해 외부로부터의 사건(von außen herkommendes Ereignis)으로써 그 사건의 개시를 고도의 주의(größte Sorgfalt)에도 예견할 수 없고 방지될 수 없어야 한다.⁴⁹⁾ 물론 조업방해는 어떤 경우에도 불가항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프로이센의 1838년의 철도법 제25조 제2문에 의해 “운영 자체의 위험 성질은 자유스런 우연의 손해배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⁵⁰⁾

미국의 US. v. Alcan Aluminium Corp. 사건⁵¹⁾에서 회사는 조업과정에서 위험물질인 구리, 크롬, 라듐, 흑연, 아연을 혼합하는 데, 2백만 갤론이 넘는 혼합액이 광산, 터널, 수로를 거쳐 인근 강에 유입되었다. 이 과정 속에서 1985년 9월 허리케인 글로리아(Gloria)가 엄습하여 강의 전 영역이 오염되어 약 130만 달러의 오염물제거를 위한 청소비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는 회사를 상대로 청소비용을 청구했으나 회사는 강의 환경오염이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허리케인은 ‘신의 행위(Act of God)’이나 환경오염의 유일한 원인자는 아니라고 판시하고 정부의 오염물 제거비용청구를 인용했다. 즉, 불가항력인 허리케인을 강의 오염의 직접적 유발자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47) 이동기, 전계논문, 73면.

48) v. Caemmerer, RvglHwB IV, 248; Kötz, Haftung für besondere Gefahr, AcP 170, 1 ff.; Heck, a. a. O., S. 85.

49) BGH VersR 1986, 92; Deutsch, Unerlaubte Handlungen und Schadensersatz, Rdnr. 347.

50) 1838년 프로이센의 철도법 내에 적용할 수 없는 사건, 불가항력은 독일법에 도입되었다. vgl. 정확한 역사 v. Cammerer, RvglHwB IV, a. a. O.

51) Günter Hager, a. a. O., S. 904.

V. 원인추정

인과관계 책임을 위해 원인추정(Ursachenvermutung)은 직접적인 책임의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독일환경책임법 제6조⁵²⁾의 원인추정은 독일민사소송법 제286조⁵³⁾ 이하의 특별규정 일뿐만 아니라 책임을 추정하게 한다. 입법자는 독일환경책임법 제3조의 하자를 반복하면서 생명, 신체, 건강 그리고 물건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추정은 침해에 따른 결과손해뿐만 아니라 침해 그 자체와도 관련된다.

1. 책임추정으로서 원인추정

독일민법 제831조 이하는 이행보조자나 피용자에 의한 책임성립요건의 실현, 건물의 붕괴 혹은 건물일부 훼손과 같은 각각 특정되어 유발되는 분야에 관련된 과실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과실추정은 책임을 객관화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 있다.⁵⁴⁾ 특별구성요건들은 위험책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과실과 관련해서 입증책임의 전환을 조절되는 위험에 연결시킨다. 유사하게 독일환경책임법 제6조는 시설이 개별사례에 따라 손해를 야기시키기에 적합할 때, 환경침해로부터 위험책임을 상승시킨다. 즉, 이러한 시설에 의한 손해야기는 추정된다. 그러나 개별사례의 적합성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조업과정, 이용되는 시설, 투입되고 공급된 물질의 종류와 혼합, 대기현상종류, 손해발생시와 발생지 그리고 손해형태의 다른 표지 및 기타 모든 형태는 중요하다. 또한 개별사례 속에서 법관의 평가가 독일민사소송법 제287조⁵⁵⁾의 손해평가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

52) 독일환경책임법 제6조(원인추정) 제1항 조업시설이 발생한 손해를 야기시키는 개별사례에 적합하다면 손해는 이 시설에 의해 발생했다고 추정된다. (생략) 제2항 시설이 규정에 따라 조업했다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략) 제3항 특별조업의무는 행정법상 허가, 부담 그리고 집행명령과 법규가 제시한 것이다. (생략) 제4항 이러한 허가과 부담, 집행명령 혹은 법규 속에서 특별조업의무를 위해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 조업의무의 유지는 추정된다. (생략).

53) 독일민사소송법 제286조(자유증거판단) 제1항 법원은 변론의 전체 취지와 채증결과를 고려하여 자유심증에 의해서 사실주장의 진위여부를 판단한다. 판결시 법관의 심증이유를 기재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이 법에 의해서 제시된 사안에 만 증거규정에 구속된다.

54) Vgl. v. Bar, Verkehrspflichten, 1980, 21 ff.; Deutsch Unerlaubte Handlungen und Schadensersatz, Rdnr. 306.

55) 독일민사소송법 제287조(손해조사와 청구의 정도) 제1항 소송당사자가 손해가 존재한 것인지, 손해가 어느 정도이고 배상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다툼이 있다면,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서 모든 상

는 지 문제이다.⁵⁶⁾ 동조 제1항 제1문은 책임충족적 인과관계와 관련해서 입증감경에 참작된다.⁵⁷⁾

2. 원인추정과 표현증거

피해자가 결과로부터 동기를 유발하는 사건의 고리를 명확히 밝힐 수 있다면, 그것이 확실한 증거(Prima facie Beweis)와 표현증거(Anscheinsbeweis)가 된다. 물론 과정의 진정성이 밝혀지게 되면 표현증거는 문제될 수 있다.⁵⁸⁾ 표현증거는 또한 위험책임의 인과관계의 문제의 경우 유효하고, 독일환경책임법 제6조에 의해서 배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표현추정과 더불어 자명하게 원인추정이 된다. 동조의 원인추정은 일반표현증거에 비해 많은 특이성이 존재한다.

(1) 증거정도

증거정도(Beweismaß)는 확실한 증거(Prima facie Beweis)에 따라 변한다. 증거정도는 사건의 정형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별사건 혹은 첫 조업이 문제가 된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2) 추 정

추정은 표현증거처럼 다른 종류의 단지 비이론적인 가능성이 명백하게 되는 것을 통해 문제될 수 없다. 오히려 법원은 과정이 다른 경우 전체 취지에 따라 추정을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황을 평가해서 결정한다. 제출된 채증 혹은 직무상 감정가에 의한 감정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인지 어느 정도 규정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법원은 손해와 이익에 대해서 입증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제452조 제1항 제1문에서 제4문의 규정들은 준용된다.

56) 독일민사소송법 제287조에 의한 손해평가를 위한 특별의무에 대해서 BGHZ 6, 62 ff.; Stein-Jonas-Leipold, ZPO, §287, Rdnr. 29 f.

57) Vgl. BGHZ 4, 192(196 f.); 58, 48(53 ff.); NZV 2002, 225; NJW 2002, 504(505); BVerfG NJW 1979, 413(414); Zöller/Greger, ZPO, 23. Auflage(2002), §287 Rdnr. 3 m. w. N.; Beweis und Wahrscheinlichkeit, 1978, S. 124 ff., 136 ff.

58) 표현증거에 대해서 Diederichsen, Zur Rechtsnatur und systematischen Stellung von Beweislast und Anscheinsbeweis, VersR 1966, 211; Greger, Praxis und Dogmatik des Anscheinsbeweises, VersR 1980, 1091.

(3) 우연한 사실의 개입

다른 사정이 개별사례의 상황에 따라 손해를 야기하기에 적합하다면 그 추정은 유효하지 않고, 독일환경책임법 제7조에 의해 환경작용능력을 보유하는 다수 혹은 유일한 시설이 문제된다. 동시에 입법자는 위험책임에 적용되는 독일민법 제830조⁵⁹⁾ 제1항 제2문을 배제하기를 원치 않았었다.⁶⁰⁾ 오히려 입법자는 독일법에서는 적으나, 과실과 우연의 충돌로써 나타나는 증거 속에서 오스트리아법에서 자주 설명되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독일법에서 우연한 원인에 의한 책임의 가중은 귀책자에게 부담되는⁶¹⁾ 반면에, 오스트리아나 스위스에서는 과책의 정도인 지분에 따라 배상할 근거로써 간주한다.⁶²⁾ 환경책임법 제7조는 이것을 추정의 영역으로 위임한다. 추정은 다른 사정이 개별사례의 상황에 의해 손해를 야기 시키기에 적합할 때, 효력이 없다. 동시에 표현증거의 문제는 책임근거와 우연의 충돌로 다시 제기될 수 있다. 침해와 손해가 환경책임법에 의해서 책임근거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시설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독일민법 모든 관여자가 연대책무자로서 귀책되는 제830조 제1항 제2문은 유효하다.⁶³⁾ 간섭하는 외부인과관계에 의해 피해자는 입증의 어려움(Beweisnot)으로부터 법률상 보호받게 된다.⁶⁴⁾

(4) 실제법상 책임의 근거

과실책임의 경우 과실추정이 책임의 근거를 이루듯이, 인과책임의 경우 원인추정은 책임의 근거를 이룬다. 그것은 위험이 독일환경책임법 제3조에 규정된 환경작용에 의해서 존재하는 한 유효하다.

59) 독일민법 제830조(공동정범과 공범) 제1항 다수가 공동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손해를 야기시키면, 각자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다수의 참여자 중에서 누구의 행위에 의해서 손해를 발생된 것인지 조사할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2항 교사자와 방조자도 공범이다.

60) BGHZ 55, 96=JZ 1971, 384(독일민법 제833조의 동물점유자책임에 대해서).

61) BGH VersR 1969, 44(가해자는 피해자의 병원시설의 이용에 대해서 귀책된다); Planck/Siber, §249 Nr. 4c; vgl. Deutsch, Haftungsrecht I, 157.

62) Österr. OGHJBl. 1990, 524; Bydlinski, Probleme der Schadensverursachung, 1964, 87 f.; Oftinger, Schweiz. HaftpflichtR, 80 f., 84.

63) MünchKomm-Stein, BGB, 3, Auflage, 1997, §830 Rdnr. 3; Soergel-Zeugner, BGB, 12. Auflage, 1998, §830 Rdnr. 1.

64) Vgl. BGHZ 89, 383(399); Benicke, Jura 1996, 127 ff.; Gernhuber, JZ 1961, 148; Staudinger/Belling/Eberl-Borges, BGB, 13. Auflage, §830, Rdnr. 4; MünchKomm-Stein, a. a. O., §830 Rdnr. 2, 22; Soergel-Zeugner, a. a. O., §830 Rdnr. 1; RGRK/Steffen, BGB, 1. Auflage; Larenz/Canaris, Schuldrecht Bd. II/2, 13. Auflag, 1994, §82 II 1 b; Baumgärtel-Laumen, Handbuch der Beweislast im Privatrecht, Band 1, 2. Auflage, 1991, §830 Rdnr. 2, 10; v. Bar, in Festschrift für Nakamura, 1996, 17 ff.

3. 추정의 번복

법정책상 합법적인 정상조업의 경우 위험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⁶⁵⁾ 입법자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음을 밝히지 않았으나, 합법적인 정상조업 대신에 규정에 따른 조업시 원인 추정을 배제했었다.

(1) 인과관계의 추정

환경정책기본법은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법이나 인과관계의 입증을 완화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 판례에 의하면 환경침해시 손해인과관계와 관련해서 입증이 감경(Beweiserleichterung)된다.⁶⁶⁾ 기본적으로 피해자인 원고는 관련법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⁶⁷⁾ 물론 손해가 보호법상 장애영역 혹은 보호영역 내에 존재할 때, 입증에 따라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된다. 손해배상을 발생시키는 특정의 손해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과학적인 인과관계입증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사회경험칙상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규정의 내용이 불명확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을 때,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증은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며 피해자의 인과관계 입증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⁶⁸⁾ 입증책임을 완화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우려가 있다.⁶⁹⁾

한편, 독일판례는 입증책임을 전환⁷⁰⁾하고 기본적으로 손해인과관계와 관련해서 표현증거를 적용한다.⁷¹⁾ 수자원공급시설의 소유자가 식용수규정에 반해 수질조사를 하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물질의 정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가해자인 소유자가 식용수 허

65) Vgl. Reh binder, Natur & Recht 1989, 155 f; Diederichsen, Bitburger Gespräche, 1989, 71 f.

66)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2다1774; 1984. 6. 12. 선고, 81다558; 1991. 7. 23. 선고, 89다카127 선고; vgl. RGZ 121, 400(402); 이동기, 전계논문, 79면-80면; BGHZ 33, 286(292 f.); 103, 197(201 ff.); Larenz/Canaris, §82, II, 1 d; Staudinger/Belling/Eberl-Borges, §830 Rdnr. 4, 114 f.; RGRK/Steffen, §830 Rdnr. 1; MünchKomm-Stein, §830 Rdnr. 3, 27; Baumgürtel-Laumen, §830 Rdnr. 6; Benicke, Jura 1996, 127(130); a. M. Deutsch, Allgemeines Haftungsrecht, 2. Auflage, 1996, Rdnr. 528.

67) Vgl. MünchKomm-Stein, a. a. O., §830 Rdnr. 26; Soergel-Zeuner, a. a. O., §830 Rdnr. 17; Staudinger/Belling/Eberl-Borges, a. a. O., §830 Rdnr. 114; Baumgürtel-Lauman, a. a. O., §830 Rdnr. 4.

68) 이은영, 채권각론, 715면; 최상호, 환경오염에 대한 민사책임,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9, 49면.

69) 이동기, 전계논문, 58면.

70) Vgl. Larenz/Canaris, a. a. O., §82 II 1 d; Staudinger/Belling/Eberl-Borges, a. a. O., §840 Rdnr. 4, 114 ff.; Esser/Weyers, Schuldrecht Band II/2, 8. Auflage, 2000, §60 I 1 b, S. 228, 230; RGRK/Steffen, a. a. O., §830, Rdnr. 1; a. A. MünchKomm-Stein, a. a. O., §830 Rdnr. 2.

71) BGH VersR 1985, 452; Soergel-Zeuner, §823, Rdnr. 296.

가의 허용한계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⁷²⁾ 물론 추정을 위해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 한에서 독일환경책임법 제6조가 개정되었다.

(2) 규정에 따른 이용증명

추정되는 원인에 따른 책임은 그 시설이 독일환경책임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규정에 따라 조업될 때, 적용된다. 일정한 조업의무가 있고 조업에 어떤 장애도 없을 때, 규정에 따른 조업이라 한다. 행정법상의 허가, 부담 그리고 강제집행명령 및 법규가 제시되는 것이 그러한 환경작용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손해원인을 위해 고려하게 하는 한 일정한 조업 의무로써 간주된다. 그러한 한에서 입법자는 인과관계의 추정과 관련하여 과실법에서 거래 의무와 보호법상의 침해를 위한 판례를 따르게 명확하게 제시했다. 물론 독일환경책임법 제6조에서 사업자는 그 시설이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조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민법 제823조 제2항에 반해 입증책임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입증 책임의 전환은, 감독이 규정되어 있을 때, 사업자에게 확실하게 감경된다. 그렇다면 독일환경책임법 제6조 제4항에 의해 문제되는 환경작용이 시설로부터 이루어지고, 감독이 조업의 무침해를 위한 어떤 시발점을 제시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청구의 유효시점에 문제되는 환경작용이 10년 이상 존재하면서 감독이 그 시점에 행해질 때, 조업의무의 준수는 추정된다. 그러한 한에서 입법자가 위험영역에 따라 입증책임분배를 행했다는 이유로 이행되었다.⁷³⁾

VI. 다수의 원인

1. 다수 인과관계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2항과 민법 제760조 제2항은 어느 사업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 각 사업자는 연대채무가 발생한다.⁷⁴⁾ 그 적용은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⁷⁵⁾ 문제점으로는 첫째, 환경오염의 가해

72) BGH NJW 1983, 2935.

73) Schmidt/Salzer, VersR 1991, 13 f.

74) 임정평,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공해에 대한 소고, 안이준 박사 회갑논문집, 박영사, 1986, 539면 이하.

75) 김형배, 채권각론(민법요점강의 IV), 신조사, 1996, 748면.

자가 불명인 경우 복수의 사업자 중 한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것까지 증명하여야 면책될 수 있다.⁷⁶⁾ 둘째, 복수 사업장의 오염물질이 집적되어 손해가 발생한 복합오염피해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이 단독으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⁷⁷⁾ 복합오염피해의 경우 주관적 가해의사가 필요치 않으며 모든 사업자는 민법 제760조 제1항에 의해 부진정연대채무를 진다.⁷⁸⁾ 각 사업자의 내부적 분담은 각자의 오염물질 배출정도, 즉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관여도에 따라 결정된다.⁷⁹⁾

독일법상 입법자는 독일환경책임법 제7조⁸⁰⁾ 제1항에서 복수인과관계의 문제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일반규정에 따른다. 환경오염으로 손해를 야기시킨 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복수인과관계 책임을 진다. 또한 다수 사업장이 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누적으로 손해 발생을 위해 충분한 환경침해물질을 방출했다면 각 사업자는 연대채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부가적 인과관계(addierte Kausalität)의 경우는 다르다. 다수가 위협하게 환경을 침해하거나, 공동 침해와 손해가 존재한다면, 독일민법 제830조, 제840조에 의해 공동정범, 공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각자는 각 지분에 따라 귀책(anteilmäßige Haftung)된다. 판례는 결과적으로 관여하는 선택적 인과관계에 대해 독일민법 제830조 제1항 제2문을 위협책임에 적용할 수 있다.⁸¹⁾ 독일민법 제830조 제1항 제2문의 적용범위에 대해 학설과 판례의 입장에 다툼이 없이⁸²⁾, 피해자 입증의 어려움이 선택적 인과관계의 연대채무의 본질적인 근거라는 데 합의한다. 다른 귀책자의 간섭하는 인과관계만이 과실, 위협 혹은 다른 원인에서 존재하고, 청구실현을 방해하는 것은 전제조건이다. 또한 선택적으로 인과적인 환경침해자는 다수를 위해서 유효하다. 독일민법 제830조 제1항 제2문의 법정책적 원칙은 그 한에서 허용된다.

76)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4, 716면; 반대설-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750면.

77) 이은영, 민법학강의, 박영사, 1995, 960면; 김주수, 전게서, 750면.

78) 대법원 1991. 10. 20. 선고, 90다20244 판결.

79) 김형배, 전게서, 748면; 이은영, 전게서, 960.

80) 독일환경책임법 제7조(추정의 배제) 제1항 개별사례의 환경침해 사정이 손해를 발생시키기에 적합할 때, 복수의 사업장이 손해발생에 적합하다면 추정은 효력이 없다. 개별사례의 손해발생적합성은 손해 개시의 시점과 장소, 손해의 형태 및 기타 개별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모든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제2항 개별사례의 여건에 대한 사정이 손해를 발생시키기에 적합할 때, 단지 한 사업장이 손해를 발생시키기에 적합하다면 추정은 효력이 없다.

81) BGHZ 55, 96=JZ 1971, 384.

82) Deutsch, Haftungsrecht I, S. 349 ff.; Weckerle, Die deliktische Verantwortlichkeit mehrerer(1974) passim.

2. 귀책되는 원인과 귀책되지 않은 원인

침해와 손해가 귀책되는 시설보유자의 환경작용에 의한 것인지 귀책되지 않는 시설에 기인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독일민법 제830조 제1항 제2문의 연대책임은 독일환경책임법 제6조 이하의 원인추정보다 다소 덜 적용된다. 시설에 대한 책임이 정당화되는 조업의 양적인 생산은 다른 조업의 적은 생산과 충돌될 때, 그것은 가볍게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독일 학설에 따르면 위험책임과 우연의 선택은 면책된다. 독일환경책임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추정의 배제는 가능한 관여하는 제3 인과관계의 경우도 동일한 선상에 있다. 가령 귀책의무가 없으나 판결이 이전의 환경작용의 영향을 배제한다면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초래될 수 있다.

VII. 결 론

한국의 환경정책기본법이 제31조에 무과실책임을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면책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은 재고되어야 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로 각자가 전액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되면 경미한 가해자도 전액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타당성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자기 배출물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 입증하여 분할책임을 지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⁸³⁾ 그리고 다수의 가해자가 있다는 것은 피해자가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가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부담시킬 것인지 결정하기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해자 사이의 구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곤란한 문제가 제기된다.

독일환경작용법은 책임시스템 하에서 환경작용에 따른 법익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위험책임이 따른다. 생명, 신체, 건강 그리고 물건의 침해로 비록 손해가 제한되어서 입증에 난점이 있다고 하지만, 책임범위를 정할 때 개별적인 손해의 증거는 입증을 위해서 필요하다. 전기회사의 백혈병 환자가 자신의 암이 조업의 환경작용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단지 조업으로 인해 통상의 경우보다 환자가 건강 침해로 인해 발암

83) 김주수, 전게서, 738면-739면; 좌윤직, 전게서, 765면; 임정평, 전게서, 768면.

율이 증가했다고 학문적 조사에 의해 제시된 경우, 프랑스나 스위스⁸⁴⁾와는 달리 한국과 독일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

주제어 : 무과실책임, 면책사유, 원인추정, 입증감경, 다수 인과관계

84) Franz, Kassationshof von 24. 3. 1981, Dalloz Sirey 1981, 545; Obergericht Zürich, SJZ 1989, 119.

【Zusammenfassung】

Umweltschaden und zivilrechtliche Haftung

Lee, Seung Woo

Das Umwelthaftungsgesetz gewährt für Schäden aus Tötung, Körperverletzung oder Sachbeschädigung infolge einer Umwelteinwirkung Schadensersatzansprüche. Es verwendet das bekannte haftungsrechtliche Junctim von Verletzung und Schaden. Damit erszreckt sich der Schutz auf besonderes zugewiesene Rechtsgüter individueller Art. Die Umwelthaftung entfällt nicht deswegen, weil die erforderliche Sorgfalt eingehalten worden ist. Auch der höchste Grad einer Sorgfalt führt nicht zum Fortfall der Haftung. Ebensowenig entschuldigt, dass der Stand der Technik eingehalten worden ist, sei es, dass die Verletzungsmöglichkeit nach dem Stand der Technik nicht erkennbar war, sei es, dass der Stand der Technik die Verletzung nicht ausgeschlossen hätte. Für den Umwelthaftung standen Unrechtshaftung, Geföhrdungshaftung und Aufopferungshaftung zur Verfügung. Eine objektive, verschuldensunabhängige Haftung, die sich auf das Prinzip des Einstehens für übermäßige Gefahr zurückführen läßt, bezeichnen wir als Geföhrdungshaftung.

Für die Kausalhaftung sind Ursachenvermutungen unmittelbar haftungsbegründend. Aus diesem Grunde bildet die eingehende Regelung der Ursachenvermutung in Umwelthaftungsgesetz eine Haftungsvermutung. Es ist anerkannt, dass die Verschuldensvermutungen die Haftung verobjektivieren. Diese Tatbestände enthalten keine Geföhrdungshaftung, sondern schließen an eine kontrollierte Gefahr die Umkehr der Beweislast hinsichtlich des Verschuldens an. Grundsätzlich trägt zwar der Anspruchsteller die Beweislast dafür, dass die Verletzung des Schutzgesetzes zu dem

Schaden geführt hat, dessen Ersatz verlangt wird. Wenn jedoch der Schaden im Verhinderungsbereich oder im Schutzbereich des Schutzgesetzes liegt, kommt man beweismäßig dem Verletzten entgegen.

Nach der Regelung haften die kumulativ Kausalen, also diejenigen, die Verletzung und Schaden voll und ganz verursacht haben können. Leiten also mehrere Anlagen umweltbeeinträchtigende Stoffe ab, von denen schon die Einlagerung eines Betriebs zur Verletzung und Schadensentstehung genügt hätte, so haften alle als Gesamtschuldner.